

예비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

■ 추첨제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월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월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일반 공급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 존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 존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30세이상 직계비속,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경우
대리		○	인감도장	계약자	
		○	인감증명서	계약자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유의사항
1.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시어 등·호수를 배정받으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께서는 배정받은 주택의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2. 이안센트럴D 일반공급 청약이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된 바, 일반공급 자격 및 신청 청약가점에 관련된 확인(검증)이 신청자의 책임 하에 입력(제시)사항만으로 접수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께서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일반공급 자격 및 신청 청약가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어 추첨일 이전에 일반공급 자격 및 신청 청약가점에 대한 확인(검증)을 받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자격이 안되거나 신청 청약가점 오류시(차순위 예비순번보다 청약가점이 높을 경우 제외) 등·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실 수 없으며, 추첨에 참가하여 등·호수를 배정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이후 확인결과 일반공급 신청자격이 아닌 신청인은 공급계약이 해제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3.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기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등·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등·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일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등·호수 배정일(당첨일) 이전에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호수 배정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견본주택에 미참석 또는 방문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 일반공급 타입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세대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호수 배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우선 또는 SMS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6. 상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안센트럴D 분양금액 및保利금확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www.iaancentrad.co.kr)